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31 (2025년 4월 3째주)

2025.04.18

2025.4.11.~2025.4.17.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 [금융감독원] 2025.4.14.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링크](#))
 - 25.4.14.~ 5.26. 기간 동안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함
 - 개정안은, (1)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을 완화하고, (2)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3)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를 완화하며, (4)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 ▶ [금융감독원] 2025.4.16. 「2024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 연결기준]」 ([관련링크](#))
 - '24년중 자회사등 소속회사 27개사가 새로 편입되고 21개사가 정리되어 전년말(329개) 대비 6개사 순증가함
 - '24년말 현재 금융지주의 연결총자산은 3,754.8조원으로, 전년말(3,530.7조원) 대비 224.0조원(+6.3%) 증가하였고, '24년중 금융지주의 연결당기순이익은 23조 8,478억원으로, 전년(21조 5,246억원) 대비 2조 3,232억원(+10.8%) 증가하였으며, '24년말 현재 은행지주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 자본비율은 각각 15.67%, 14.55%, 12.84%으로 전년말 대비 소폭 하락함. 한편, '24년말 현재 금융지주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0%로 전년말(0.72%) 대비 0.18%p 상승하였으며, '24년말 현재 금융지주의 부채비율은 28.2%로 전년말(27.2%) 대비 1.0%p 상승하였음
- ▶ [금융감독원] 2025.4.16.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관련링크](#))
 -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운영해온 기간 동안 소비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탐색할 수 있었고, 기타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되어 온 바 있음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도입되며 예금상품에 대한 비교·추천 및 가입 지원 서비스가 대면(은행대리업, 하반기 도입 예정) 및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 [금융감독원] 2025.4.17.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고금리 부담, 내수부진, 관세충격으로 인해 적극

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하며 상호관세 비상대응 TF를 통해 대처할 것을 강조하고, 금융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구체적으로, 수출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세대응에 필요한 자금지원 여력 확보를 위한 규제 합리화 등 감독행정 조치를 적극 시행하며, 자금공급 기능 위축 방지를 위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당부함

▶ [기획재정부] 2025.4.15.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 개최」 ([관련링크](#))

-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TF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법 개정 및 공포에 따른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함
- 범부처 지원 TF는 앞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아우르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지원할 계획

2. 기타-입법예고/규정변경

▶ [금융위원회] 2025. 4. 14.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링크](#))

- (1)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 손자회사주식 소유의무를 면제하며, (3)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한도를 15%까지 확대하고, (4) 본질적 업무 위탁은 사전승인이 아닌 사전보고로, 본질적 업무가 아닌 업무 위탁은 사후보고체계로 전환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5)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관련구성원

정성구

변호사

02-316-4763

skcheong@shinkim.com

문은경

변호사

02-316-1703

ekmoon@shinkim.com

한지연

변호사

02-316-1830

jyhan@shinkim.com

배예진

변호사

02-316-1880

yjbae@shinkim.com

김정현

수석전문위원

02-316-4310
jhyukim@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